
정 관 (안)

협력형 ITS 민·관협의체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협의체의 명칭은 총회를 통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투표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조 (목적)

- ① 협의체를 통하여 범국가적 협력형 ITS 산업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해 관련 민간과 정부 및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간 상호 협력과 기술 이슈사항에 대한 합의의 장을 마련하고,
- ② 협력형 ITS의 주요한 정책 협의 및 결정, 서비스 도입·확산 지원 방안, 표준의 확산 지원 등 관련 분야의 기술교류 및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논의의 장(場)을 제공하고,
- ③ 협력형 ITS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체계 구축과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공유와 정부정책 반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국의 소재지)

협의체의 사무국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 둔다.

제4조 (업무)

협의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형 ITS 관련 정책, 법·제도 검토 및 발의
2. 협력형 ITS 분야 관련 토론회,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홍보
3. 협력형 ITS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4. 협력형 ITS 분야 기술과 서비스 제안 및 적용, 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5. 협력형 ITS 분야 관련 표준 개발 및 확산 지원
6.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및 교류
7. 기타 본 협의체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종류)

- ① 협의체의 회원은 기관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기관회원은 협의체의 목적을 공유하는 영리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한다.
- ③ 개인회원은 협의체의 목적을 공유하는 대학 등에 소속된 개인으로 한다.
- ④ 특별회원은 협의체의 목적을 공유하는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협의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회비)

- ① 협의체의 기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개인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 ② 협의체 연회비 기준은 총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정관에 따라 활동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기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 ③ 개인회원에게는 제18조의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협업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업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각 결의사항 준수
3. 협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참여와 협력
4. 기타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협업체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협업체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3. 협업체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였을 경우

제3장 의 장

제12조 (의장의 구성)

① 협업체의 의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의장 2인 (관대표 1인, 민대표 1인)
2. 부의장 1인 또는 2인

제13조 (의장의 임기)

①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임기 중 공석이 되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 ③ 의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자 취임 전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제14조 (의장의 선임)

- ① 의장의 선임은 집행위원회의 추대를 받아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임한다.
- ② 부의장은 회원 중에 의장이 지명한다.

제15조 (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조 직

제16조 (조직 구성)

- ① 협의체 활동과 제4조 사업을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는 의장,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5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 ① 의장은 협의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본 협의체의 최고 의결회의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의체의 합병 또는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집행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3. 의결권을 가진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
- ③ 의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20조 (총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④ 협의체 회원은 그 의결권을 위임을 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6장 집행위원회

제21조 (구성 및 활동)

- ① 협의체의 총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정관에 명시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기술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 부의장, 관련부처 공무원, 기술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 ④ 집행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협의체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협력 및 운영을 지원한다.
- ⑥ 그밖에 집행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소집)

-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1.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본 협의체 운영과 관련 중요상황이 발생할 때
- ② 집행위원회 소집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한다.

제23조 (집행위원회의 논의·심의·의결사항)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심의·의결한다.

1. 협력형 ITS 도입에 필요한 사항
2. 협의체 집행에 관한 사항
 - 집행과 관련한 규정의 검토
 - 집행과 관련된 규칙 및 지침 등의 제·개정
3.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술위원회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술위원회 업무배정에 관한 의견조정
 - 참가기관 간 분쟁에 대한 의견조율 및 조정
 - 위원회 선정에 관한 심사·의결
6. 협의체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제24조(의결방법)

-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으로 의결에 참여하거나 다른 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집행위원회 의결은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한다.

제7장 기술위원회

제25조 (구성 및 활동)

- 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한 개 이상의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통합, 폐지 및 신규 기술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 ② 기술위원은 협의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분과에 관심 있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기술별 위원장은 기술위원 중 집행위원장이 추천하여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 ④ 기술위원회 간사는 기술위원장이 기술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⑤ 기술위원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 ⑥ 기술위원회는 논의 안건별로 작업반(WG,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반

장과 문서작성자를 둘 수 있다. 반장은 기술위원장이 선임한다.

- ⑦ 기술위원회는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제4조에 명시된 협의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연구 활동, 토론회 개최, 언론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 ⑧ 기술위원회별로 제4조에 명시된 협의체 사업에 대한 세부 수행 범위는 별도 규정으로 집행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⑨ 기술위원회 회의결과는 협의체 회원에게 공개한다.

제26조 (소집)

- ① 기술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기타 분과위원회 관련 중요상황이 발생할 때
- ② 기술위원회 소집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한다.

제27조 (기술위원회의 논의·심의·의결사항)

- ① 기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위원회에 전달한다.
- ② 기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심의·의결한다.
 - 1. 제안된 안건의 타당성 검토 및 채택
 - 2. 각 기술위원회에 대한 기술적 내용 검토
 - 3. 국내·외 관련 기술의 검토 및 반영
 - 4. 각 기술에 대한 타 관리부처와의 협력

제28조 (의결방법)

- ① 기술위원회에서의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의결사항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기술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 ① 협의체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무집행, 문서의 기록과 보존 관리, 각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운영재원)

- ① 협의체의 운영재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②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③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은 지원받을 수 있고 후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다.

제31조 (회계)

- ① 협의체의 재정, 회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32조 (해산)

협의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 회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33조 (정관변경)

협의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20조의 의결로 한다.

제34조 (운영규정)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협의체 설립을 위하여 협의체 준비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협의체 발족연도의 집행위원회는 준비위원회를 계승한다.
- 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체 발족 시에 초대 임원으로서 의장은 협의체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 ③ 제25조 ③항의 기술위원장의 선임은 협의체 발족연도에는 기술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술위원장을 선임한다.

제3조(회원의 회비)

- ① 회원의 연회비는 부과 시점과 부과 기준을 정하기 전까지 면제한다.